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6. 3. 30 조례 제27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관리·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인지도 제고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한 상표 “용인 파미조아용”을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농산물 캐릭터”란 시가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캐릭터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4. “사용권”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생산자 및 단체”란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단체, 농업법인, 농식품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6. “위원회”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식량·유통) 구조개선 분과]를 말한다.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및 사용료) ①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의 사용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며, 농산물 캐릭터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농산물 캐릭터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사용신청 대상자 및 자격)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대상자는 시에 농산물 생산지를 둔 생산자 및 단체(가공업자의 경우 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품목에 한한다.

1.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2.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등 경기도 및 용인시 조례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제5조(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 심의)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류 및 자격 유무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정지,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른 무농약 농산물·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6.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
7.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8.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용인시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제조원으로 하여 생산·관리되는 「용인의 소반」의 가공제품인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경기도 및 용인시 조례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제8조(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장사용 신청 시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등에 따른 명의변경
2.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추가 등 품목의 변경
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4. 그 밖에 주소 등 사용 승인서 기재사항의 변경

② 사용승인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승인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는 별표 1, 농산물 캐릭터는 별표 2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도법에 따라 확대·축소할 수 있다.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제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사용권자에게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했을 때에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중지)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의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권자는 처분 기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권자가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 폐지(휴업)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 관련 해당 품질인증을 연장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 또는 회수 당한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승인되지 않은 품목 및 농산물을 넣어 출하하거나 판매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우리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의 경우(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7.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유인된 포장재 등은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를 따른다.

제16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1. 각종 농산물의 포장재와 포장상자 등 제작 지원
2. 교육 및 연수사업
3. 각종 행사 시 공동브랜드 홍보 지원
4. 그 밖에 공동브랜드와 관련한 지원사업

제17조(홍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관계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 및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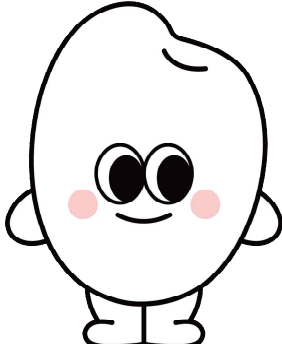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모양과 의미

1. 브랜드명 : 용인파미조아용
2. 의 미 : 농산물을 상징하는 ‘팜(Farm)’ 과 ‘-이’ 를 조합하여 발음하기 쉽고 친근감 있게 ‘파미’ 라고 표현하였으며, ‘용인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좋다’ 는 의미를 담아 용인시 캐릭터인 ‘조아용’ 과 결합하여 명칭을 정하였다.
3. 브랜드 로고

텍스트형	심볼형
	

[별표 2]

용인시 농산물 캐릭터

캐릭터명	관련이미지	비고
파 미		<p>“팜(Farm) + -미”의 합성어로 용인시 농산물을 뜻하는 캐릭터이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씨앗”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으며, 씨앗과 새싹을 표현하기 위해 갈색과 녹색을 사용하였다.</p>
백옥이		<p>용인의 대표 쌀브랜드인 “백옥쌀”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쌀알을 이미지화하였으며, 쌀의 색인 미색을 활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준다.</p>
청경채		<p>용인 특산품인 청경채를 활용한 캐릭터로 “청경채”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실제 청경채 색상인 초록색과 하얀색을 사용하여 표현하여 싱싱한 느낌을 준다.</p>
화 미		<p>용인시 화훼 캐릭터인 ‘화미’는 꽃(화)+아름다울(미)을 결합하여 이름을 정하였고, 생김새는 머리에 꽃을 달고 있으며 화훼를 상징하는 분홍색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p>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제8조 관련)

- 승인번호 :
- 성명(단체명) :
- 대표자 :
- 주소 :
- 지정품목 :
- 유효기간 :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별지 제3호서식]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대장(제8조 관련)

승인번호	지정일자	품질인증을 받은 자			내 용		비고
		성 명	법인명 (생산자 단체)	주 소 (전화번호)	인증품목	승인기간	

210mm ×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변경 신청서(제9조 관련)					
사용승인 내역	승인번호	승인일시	성명(단체명)	승인품목	연락처
변경 신청사유					
변경내역 (요지중심)	종전				
	변경				
신청인	성명(단체명)			구성원수 (참여농가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20 . . ~ 20 . .
	농 지(사업장) 소 재 지			출하기간	20 . . ~ 20 . .
				재배면적	ha
	농 산 물 인증현황	친환경인증, GAP인증, 기타()		생 산 량 (ton)	
브랜 드 사 용 계 획	품 목	포장단위(kg)	포장재수	사용기간	주출하처
참여농가별 현황 : 별첨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div> 용인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1. 공동브랜드 사용 이행각서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3.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